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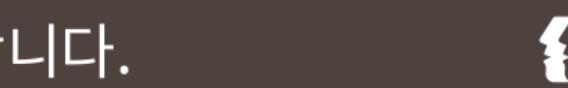
우리가
직접
만드는

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

<http://taeil.kctu.org/all3>



이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게시하였으며 무단 훼손과 철거를 금지합니다.



**근로기준법
11조 개정**

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

<http://taeil.kctu.org/all3>



이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게시하였으며 무단 훼손과 철거를 금지합니다.



**노조법
2조 개정**

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

<http://taeil.kctu.org/all3>



이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게시하였으며 무단 훼손과 철거를 금지합니다.



중대재해기업
처벌법 제정

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

<http://taeil.kctu.org/all3>



이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게시하였으며 무단 훼손과 철거를 금지합니다.

